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가합12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전 문

원고A

피고B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C

변론 종결 2017. 12. 5.

판결 선고 2017. 12. 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7.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1] 목록 기재 3번 건물 전부 및 별지 [2]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각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10. B과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공장 시설물 비품을 포함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매매계약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매수인은 중개업자 입회하에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매매대금 일십억원 (₩1,000,000,000)

계약금 일억원 (₩100,000,000)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일억원 (₩100,000,000)은 2017. 1. 10.에 지불한다.

잔금 일이천만원(₩120,000,000)은 2017. 1. 31.에 지불한다.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을 2017. 1. 31. 인도한다.

특약사항 : 1. 현재 하나은행 금 636,000,000원, 오케이 저축은행 299,000,000원 설정되어 있음.

2. 하나은행, 오케이저축은행 채무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정리한다.

3. 전 채무 6억 8천은 잔금으로 인정한다.

4. 공장 시설물 비품 전체 포함됨, 별지 첨부

매도인 B(인)

매수인 A(인)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B에게 2017. 1. 10. 계약금 100,000,000원 및 중도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1. 24. 잔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B은 2017. 8. 21. 서울회생법원 2017하단3346호로 파산을 선고받았으며 변호사 C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 포함된 별지 [2] 목록 기재 유체동산 일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민사소송법 제239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하며(제423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424조). 또한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파산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제447조), 법원은 신고된 파산채권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며(제459조),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이의가 있는 때에는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통하여 파산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정하고(제462조), 이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제463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465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건물 및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은, B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파산법원에 채권을 신고하고,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 등의 이의 여부에 따라 파산채권으로 확정받거나 부인된 채권에 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을 통하여 파산채권을 확정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원고가 ① 위 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위 채권에 관한 소는 파산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채권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소로서 부적법하고, ② 위 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의 신고를 하고 파산관재인, 파산채권자 또는 파산채무자 등의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었다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③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었다면 이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수계 및 채권확정의 소로 소송형태가 변경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B에 대한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거쳐야 할 위와 같은 절차의 진행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청구취지를 그대로 유지하며 진행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다(이 법원은 원고에게 약 2개월의 기일을 주어 파산절차에서의 진행과 이 사건의 청구취지에 관하여 검토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제3차 변론기일에서 여전히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기존 청구취지를 유지하며 더 이상

주장, 입증할 사항이 없으므로 그대로 진행하여 달라는 의사를 보인 바 있다). 이에 이 법원으로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바, 결국 원고가 파산절차에서 원고 주장의 채권에 대하여
파산채권 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소송형태를 변경하지 않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소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반 민사소송을 통하여 파산관재인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이행을 소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종전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합83호)를 마쳤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이행이 되어야 하고 B의 파산으로 인하여
가처분등기까지 마쳐 둔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소송 도중 파산선고가 있고 청구채권이 파산채권으로 해석되는 이상 그 행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파산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지현

판사남관모

판사김효진

별지